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(이문상의원 대표 발의)

의 안 번 호	2005-11

발의일자 2005. 3. 7
발 의 자 이문상, 성재윤, 최연조, 최동식, 김석관, 박종권, 최갑현,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이 개정(법률 제7362호, 2005. 1. 27)되어 정례회 회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,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(회기)삭제(현행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)

○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 개선

3. 법적근거

○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(2005. 1. 27 개정)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사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 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	<삭제>

관 계 법 령 발 췌

지방자치법

第36條 (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) ①地方議會는 매년 1回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하여 市·道에 있어서는 10日, 市·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7日의 각 범위내에서 監査를 실시하고,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本會議議決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.

第38條 (定例會) ①地方議會는 매년 2回 定例會를 개최한다.

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1999.8.31]

제41조 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일수) ①생략

②정례회의 회기는 년 2회를 합하여 시·도의회의 경우 40일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,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**삭제 2005. 1. 27, 법률 제7362호**>

③생략

第118條 (豫算의 編成 및 議決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·道는 會計年度開始 50日전까지, 市·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.<改正 1991·12·31, 1994·3·16>

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·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, 市·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.<改正 1991·12·31>

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.

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豫算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修正豫算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第125條 (決算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出納閉鎖후 80日 이내에 決算書 및 證憑書類를 작성하고 地方議會가 選任한 檢查委員의 檢查意見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

다.<개정 1999.8.31>
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日 이내에 市·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에게, 市·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·道知事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8.31>
③第1項의 檢査委員의 選任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9조의4 (정례회의 집회일 등)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정례회는 매년 6월·7월중에, 제2차 정례회는 11월·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. 다만 ,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·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.<개정 2000.7.1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2000.7.1>
1.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
2.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지방의회에의부의안건
③법 및 이 영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